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2662

제출년월일 : 2025년 3월 31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서울시 서남권 시민들의 의료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'서남권 거점 공공종합병원'으로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,

나.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자 진료와 병원 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 중

다. 현 위·수탁 협약 기간이 만료('25.8.26.)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(사무의 위임 등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관리운영의 위탁)

○ 추진 필요성

-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하여야 하는 공공성을 달성하고 동시에 병원 경영이라는 수익성을 부가적으로 추구하여야 함
-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성과 다년간의 공공의료 기관의 성공적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다. 위탁사무 내용

○ 의료취약계층 등에 대한 공공 진료와 일반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

○ 병원 시설물 운영·관리 및 기타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

○ 공공의료 확충사업 등 공공의료 사업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○ 시 설 명 : 서울특별시 서남병원

○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20(신정동)

○ 시설규모 : 대지 11,189.40㎡, 건물 39,262.5㎡(지하4층, 지상8층)

○ 지원시설 : 서남권 거점 공공종합병원

○ 개원일자 : 2011년 5월

· **종별 : 종합병원**

· **층고** : 지하4층, 지상8층

- 외래부 : 진료실, 검사실, 재활의학센터 등
- 병동부 : 일반입원실, 중환자실, 수술실 등

· **의료정보통합시스템** : EMR, PACS, OCS

마. 민간위탁기간

○ 2025년 8월 27일 ~ 2030년 8월 26일(5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총 8,955,570천원('25년 예산)

○ 산출근거

(단위 : 본예산, 천원)

구 분	'24년도 예산	'25년도 예산
합 계	11,458,272	8,955,570
민간위탁금	8,894,174	4,889,463
공공의료 손실보전	8,132,418	3,635,000
건강돌봄 네트워크	425,756	454,463
셔틀버스 운영	300,000	300,000
전신용 전산화 단층엑스선 촬영장치(CT) 리스	-	500,000
노후설비부속교체	36,000	-
민간위탁사업비	2,564,098	4,066,107
의료장비 도입 및 기능 강화	980,038	2,597,844
지하 주차장 환경 개선	-	670,000
노후 환자동의서작성시스템 교체	-	274,230
노후 방화벽 교체 및 웹방화벽 도입	-	124,033
디스플레이 설치	-	400,000
식당 노후환경개선 공사	167,500	-
입원환자용 냉장고 교체	22,000	-
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	1,374,560	-
노후 개인정보필터링솔루션 교체	20,000	-

※ 세부 산출근거 : 붙임 1

아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(조직담당관-2384, '25.3.7.) : 적정(권고)

- (권고내용) 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변경 시에도 진료인력 및 진료서비스 유지되도록 대책 마련

- (대 책) 수탁기관 적격자심의 시, 고용유지·승계 정도를 포함하여 평가

  · 고용유지·승계 정도 80% 이상 의무

  ·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 기준,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법 제117조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· 검사 · 검정 ·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·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·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· 검사 · 검정 ·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·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시립병원, 보건 · 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○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

제10조(관리 · 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 ·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「의료법」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

2.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 · 약학 등에 관한 교육 · 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 ·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4. 서울특별시 서남병원

제13조(준용)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 이외에 병원의 관리 · 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병원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　　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시민건강국 공공의료과 이숙종 (☎ 2133-9248)

붙임 1

- 산출근거

「민간위탁금」

▶ 공공의료 손실보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공공의료손실보전	8,507,000	7,927,000	8,269,296	8,132,418	3,635,000

▶ 건강돌봄 네트워크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산출 내역
계	454,463	
인건비	318,083	· 간호사(4명), 사회복지사(2명)
복리후생비	43,000	
의료사회사업비	93,380	· 치료지원 사업비 · 퇴원연계 대상자 일상생활 복귀지원 사업비 · 건강 취약계층 방문진료·방문서비스 운영비 · 방문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 · 만성질환(고혈압, 당뇨) 대상자 자조모임 운영비 · 지역사회 건강정보 제공 및 교육(건강강좌) 운영비 · 건강포스터 및 교육자료 제작

▶ 셔틀버스 운영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산출 내역
외주용역비	300,000	· 서남병원 셔틀버스 운영 4대

▶ 전신용 전산화 단층엑스선 촬영장치(CT) 리스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산출 내역
리스료	500,000	· CT 장비 리스 1식

「민간위탁사업비」

▶ 의료장비 도입 및 기능 강화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예산액	산출 내역
계		2,597,844	
의료장비	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관련	2,297,844	· 응급실 CT 외 6점
	서남병원 위탁 운영 관련	300,000	

▶ 지하 주차장 환경 개선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산출 내역
건물	670,000	· 바닥 및 벽체 균열 보수 등 지하 주차장 환경 개선

▶ 노후 환자동의서작성시스템 교체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산출 내역
계	274,230	
기타무형자산	228,800	· 환자동의서작성솔루션(SW)
공기구 비품	45,430	· 태블릿 모니터, 모바일 태블릿, 서버 스토리지 등

▶ 노후 방화벽 교체 및 웹방화벽 도입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산출 내역
공기구 비품	124,430	· 방화벽 2식, 웹방화벽 1식

▶ 디스플레이 설치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산출 내역
공기구 비품	400,000	· 디스플레이, 영상송출장치, 디지털믹서 등 개선